

의안번호	제 403 호
의결 연월일	2016. . . . (제 회)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5월 31일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3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1일

제 출 자 : 박종규, 박봉순, 박한범  
임병운, 장선배, 최병윤  
이양섭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치매유병률('15)을 보면, 충북의 경우 10.6%로 전국 평균 9.8%보다 높은 수준임.
- 이에 도민의 치매예방 등 관리에 관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치매관리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다.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라.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마.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7조)

- 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의무를 규정함 (안 제8, 9조)
- 사.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함 (안 제11조)
- 자.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차. 치매관리에 공헌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13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 26 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검토
- 마.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3.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4.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
5.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및 조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

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 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치매예방 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 2. 비용 발생 요인

- 치매예방 및 환자 돌봄지원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 3. 관련조문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6조의2,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의 2
- 가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16년 추진 중인 치매관리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2,945,000천원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700,000천원
- 치매상담센터 운영 : 579,970천원
-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 3,957,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국비 70%, 도비 30%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도비 20%, 시군비 80%
- 치매상담센터 운영 : 도비 5%, 시군비 95%
-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 도비 20%, 시군비 8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 성 식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601,994	1,644,994	1,644,994	1,644,994	1,644,994	8,181,970	
국 비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2,060,000	
도 비	362,2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1,845,400	
시군비	827,794	862,194	862,194	862,194	862,194	4,276,570	
세 출	1,601,994	1,644,994	1,644,994	1,644,994	1,644,994	8,181,970	
광역치매센터	589,000	589,000	589,000	589,000	589,000	2,945,000	
인지재활프로그램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치매상담센터	115,994	115,994	115,994	115,994	115,994	579,970	
치매환자 돌봄재활	757,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957,000	
재원 조달	1,601,994	1,644,994	1,644,994	1,644,994	1,644,994	8,181,970	
의존 재원	소 계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2,060,000
	보조금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2,060,000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362,2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1,845,400
	지방세	362,2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1,845,400
	세외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특별회계						0	
특별회계						0	
특별회계						0	
시·군비	827,794	862,194	862,194	862,194	862,194	4,276,570	
기 타 (민간 자부담)						0	